

현행 로스쿨 체제 하의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대내외적 평가 분석¹⁾

이 호 선

· 1989년도 사법시험 합격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상법, EUB비즈니스 및 국제통상)



I. 조사의 대상과 범위

필자는 2015. 3. 17.부터 31.까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대학(법학과)교수, 그리고 변호사, 이상 세 집단을 상대로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²⁾

그 결과 로스쿨 측 교원은 95명, 학부 교원은 92명, 변호사 89명, 도합 276명의 교수와 변호사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로스쿨 교수진들과 변호사들은 설문 분석의 편의를 위해 소속과 법조경력을 각각 묻었고, 법과대학 교수진의 소속은 설문에 따라 그 소속이나 경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 따로 묻지 않았다.

1) 이 글은 필자가 2015. 4. 11. 한국연구재단과 (사)법과 역사학회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법조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한국의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세 가지 전망 : 차선, 차악, 그리고 최악”이라는 발표문의 제3장에 있는 부분을 옮겨 실은 것이다. 원래 위 발표문의 내용은 제2장(남의 옛날 이야기: 미국식 로스쿨의 전개)에서 개인 도제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직업 로스쿨을 거쳐, 지금의 대학원식 로스쿨로 이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제3장(우리의 지금 이야기 : 이른바 한국식 로스쿨의 현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학부법학과 교수들, 그리고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로스쿨의 현재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세 그룹을 이하 각 로스쿨 교수진, 법과대학 교수진, 그리고 변호사로 칭하기로 한다. 별첨하는 주관식 설문 응답지에는 로스쿨 교수진을 그룹 1(G1), 법과대학 교수진을 그룹 2(G2), 변호사들을 그룹3(G3)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응답 로스쿨 교수진의 소속 학교 분포도

| ■ 선생님께서 계시는 법전원의 입학정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 | | |
|----------------------------------|----|-----|--|
| 150명 | 4 | 4% | |
| 120명 | 8 | 29% | |
| 100명 | 11 | 12% | |
| 60~80명 | 28 | 29% | |
| 40~50명 | 24 | 25% | |
| No Answer | 0 | 0% | |

응답 변호사 그룹의 법조경력 분포도

| ■ 본인의 법조경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요? | | | |
|------------------------------|----|-----|--|
| 15년 이상 | 12 | 13% | |
| 10~14년 | 15 | 17% | |
| 6~9년 | 28 | 31% | |
| 1~5년 | 32 | 36% | |
| No Answer | 2 | 2% | |

이 조사는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발휘 수 있는 그룹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비교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³⁾

이런 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은 그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상대방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어떤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서로의 입장을 살펴보거나, 스스로 내리는 평가와 외부의 평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일치와 불일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II. 설문조사결과 분석

1.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문제점

로스쿨 입학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고비용 구조로 인한 법조 직업 접근 제한이라는 원초적 불공정성의 문제이고, 둘째는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내

3) 설문조사 결과는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필자의 블로그에 전문을 게재하였다. 가능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간혹 설문 의도와 무관한 답변 내용도 있었지만 가감 없이 순서대로 정리하여 실었다.

a. 로스쿨 교수 주관식 응답내용 <<http://blog.naver.com/hslee1427/220317191011>>

b. 학부 교수들 주관식 응답내용 <<http://blog.naver.com/hslee1427/220317191344>>

c. 변호사들 주관식 설문 응답 <<http://blog.naver.com/hslee1427/220317191669>>

지 투명성의 확보, 그리고 법률 전문가 양성을 한다면서 정작 전형 과정에서 법학 소양능력을 측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선발 제도 운영상의 문제이다. 2014년 전북대 경영학부 천도정 교수와 중앙대 경영학과 황인태 교수가 연구한 <법조인 선발 제도별 법조계 진입 유인 실증 분석>에 의하면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⁴⁾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집안의 소득이 4분위가 되어도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될 생각을 하지만⁵⁾,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는 전 국민의 50%에 해당하는 3~7분위 국민의 경우 법조계 진입유인이 낮아짐으로 인해 법조인 선발이 소득으로 왜곡될 것으로 분석하였다.⁶⁾ 반면 소득분위 9~10 분위에 속하는 계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로스쿨 진학에 진입장벽이 없어 법조계 아닌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법조계 진입을 매우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⁷⁾ 다시 말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국민의 50%를 아예 경쟁 심리에서 탈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입학 단계에서의 심리적 격차가 가져오는 법조 접근 제한성은 대학원 로스쿨을 고집하는 우리 체제 하에서는 풀 수 없는 원죄로 보인다.

그럼 다음으로 입학 전형은 어느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인재 선발의 객관적 기준이 작동되고 있는가 보자.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 집단 중 로스쿨 교수들에게만 물어 보았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재 소속 학교의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의 공정성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 90~100 | 47 | 49% | | |
| 80~89 | 22 | 23% | | |
| 70~79 | 12 | 13% | | |
| 60~69 | 2 | 2% | | |
| 50~59 | 8 | 8% | | |
| 40~49 | 0 | 0% | | |
| 30~39 | 4 | 4% | | |
| 20~29 | 0 | 0% | | |
| 10~19 | 0 | 0% | | |
| 0~9 | 0 | 0% | | |
| No Answer | 0 | 0% | | |

4) 소득분위에서는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 10분위가 가장 높은 단계이고,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말한다.

5) 천도정 외, 72면

6) ibid.

7) ibid., 75면

| <input type="checkbox"/> 현재 소속 학교의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의 투명성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 90~100 | 46 | 48% | | |
| 80~89 | 27 | 28% | | |
| 70~79 | 11 | 12% | | |
| 60~69 | 2 | 2% | | |
| 50~59 | 6 | 6% | | |
| 40~49 | 2 | 2% | | |
| 30~39 | 0 | 0% | | |
| 20~29 | 0 | 0% | | |
| 10~19 | 1 | 1% | | |
| 0~9 | 0 | 0% | | |
| No Answer | 0 | 0% | | |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의 공정성과 관련하여서는 로스쿨 교원들의 49%가 90점 이상을, 23%가 80점 이상을 부여하여 전반적으로 공정성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95명 중에서 8명이 50-59점을 주고 있고, 4명은 40점 미만을 주고 있는 것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로스쿨 교수들 내부적으로도 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을 60점 이하로 평가하는 비율이 12%라고 하여 이를 단순히 적은 비율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로스쿨이 갖는 공익성이 너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성에 있어서도 80점 이상이 76%로 일단 로스쿨 교수들 자체적인 평가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0점미만으로 평가를 한 로스쿨 교수들은 9명으로 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현재 로스쿨에서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보기로 하자.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input type="checkbox"/> 신입생 입학 전형시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세개 이상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 | | |
|---|----|-----|--|--|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 70 | 74% | | |
| 영어 점수 | 26 | 27% | | |
| 학점 | 71 | 75% | | |
| 출신 학부 | 61 | 64% | | |
| 사법시험 공부 경험(1차 합격 포함) | 31 | 33% | | |
| 법학 전공 유무 | 12 | 13% | | |
| 개인적 이력(스펙) 및 가정환경 | 19 | 20% | | |

| | | | |
|------------|----|-----|--|
| 외모 | 1 | 1% | |
| 면접장에서의 분위기 | 14 | 15% | |
| 나이 | 4 | 4% | |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이 설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점(75%)과 법학적성시험(74%)으로 양자는 비슷하였고, 그 뒤를 출신학부(64%)가 뒤 이었는데, 출신학부 다음으로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포함한 사법시험 준비 경험 유무(33%)가 꼽혔다. 영어 점수(27%)는 그리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로스쿨 지원자들의 영어 성적이 매우 상향평준화 되어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학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빅3 요인인 학점, 법학적성시험, 출신학부가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을 미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LEET와 영어에서 별 차이가 없을 때 이른바 SKY 출신이면서 학점이 좀 낮은 지원자와, 학점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비 SKY 출신 지원자 중에서 로스쿨들은 어떤 사람을 선호할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일부 알려진 사실로 보면 서울대와 같이 소위 상위권 학교일수록 확실히 자교 출신 등 학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 이런 경향은 학부를 법조 커리어의 결정인자(決定因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학벌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사법시험이 시험 성적과 그 이후의 연수원에서의 성취도를 바탕으로 세칭 학부 서열을 뒤집고 법원, 검찰 및 우수한 로펌으로 직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건강한 법조배출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입학 전형 요소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인적 이력, 소위 스펙과 가정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명)에 달하여, 법학 전공 유무(13%)보다 높았다는 것이다.⁹⁾ 심지어 면접장에서의 분위기를 꼽은 비율도 15%에 달하고 있다. 비록 로스쿨 교수들 스스로 입학 전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에서의 객관적 측정지표의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¹⁰⁾ 이

8) 2014년도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3명 중 서울대 출신은 65.4%이고, 고려대와 연세대 학부 출신이 각 10.5%(16명)로 이들 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 출신들의 비율은 13.6%에 그치고 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4>>

9) 한 주간지는 2014. 3. 법률관련 지도층 인사 자제의 로스쿨 진출 현황에 관한 기사를 신기도 했다.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03/31/201403310500002/201403310500002_1.html> 이런 내용이 언론사들의 취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10)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해 안으로 로스쿨 입시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심지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자기소개서에 써내는 지원자도 있다. 입학 시준만 되면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당락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위 기사 중의 일부이다. 마지막 부분을 잘못 읽으면 마치 청탁이 있었어도 합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이해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소개서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썼을 때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지 않는 한 그 자기소개서는 그대로 면접위원의 책상위까지 올라간다. 물론 면접장에서 위원들에게는 금지된 내용을 쓴 경우에 점수에 반영하지 말라는 친절한 주의 사항이 주어지지만, 막상 그것을 어떻게 감점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노리고 수험가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예컨대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일부러 “영어 동아리를

와 관련하여 로스쿨 교수들은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법학능력 측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모든 지원자들에게 기초 법학 지식을 묻는 제도를 두거나(26%), 적어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7%)고 답하여 53%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input type="checkbox"/>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학교별로 법학능력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 | |
|---|----|-----|--|
| 지금처럼 일체 불허하여야 한다 | 42 | 44% | |
| 모든 지원자들에게 기초적 법학 지식을 묻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 | 25 | 26% | |
|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6 | 27% | |
| 개인적 이력(스펙) 및 가정환경 | 2 | 2% | |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을 일체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44%에 달하여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의 원조 격인 미국의 각 주의 로스쿨들은 그 신입생 선발에 있어 자율권을 갖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로스쿨 입학 전에 도제 경험을 쌓도록 요구하기도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로스쿨 입학 시에 법학 소양을 측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한 행태는 확실히 로스쿨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일본도 학교 자율에 맡겨 법학 기수자와 미수자에 대한 선발 절차를 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¹¹⁾ 2000년 미국식 로스쿨을 학부에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부체리우스 로스쿨(Bucerius Law School)은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객관식 시험과 에세이를 통해 2배수를 선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개인 면접과 집단 토론, 발표 등 심층 구술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우리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예비 법조인을 선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건 상당 부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있

통해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식으로 쓰도록 지시한다고 한다.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른 지원자는 자기 소개를 할 기회를 잃지만, 허위라도 써 놓은 사람은 면접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면접위원에게 주는 첫인상으로서의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이력을 쓴 수험생을 아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지 않는 한 교육부가 시도하고 있다는 위 방안은 정직한 수험생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부작용만 빚을 수 있다.

11) 이호선(2011),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 국민대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43면.

12) 부체리우스 로스쿨에 관한 소개는 이광택, 위 대한법학교수회(2013, 7, 5.), 27면 참조. 이 학교는 독일의 사법국가시험에서 여타 학교들보다 탁월한 성적을 내는 것으로 최고 명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입학 전형에 관하여는 <http://en.wikipedia.org/wiki/Bucerius_Law_School> 참조. 부체리우스 로스쿨 모델은 왜 우리 로스쿨이 대학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든다.

는 객관적 측정 지표가 도입되어야만 한다.

2.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로스쿨의 현재

당초 로스쿨 출범의 명분으로 제시하였던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법조인력 양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세 집단에 동일한 설문을 제시하였다.

응답자: 로스쿨 교수진

□ 현재의 추구하고 있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에 대한 기대치를 100으로 했을 때, 본인은 현실적으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 90~100 | 8 | 8% | |
| 80~89 | 26 | 27% | |
| 70~79 | 22 | 23% | |
| 60~69 | 17 | 18% | |
| 50~59 | 5 | 5% | |
| 40~49 | 4 | 4% | |
| 30~39 | 8 | 8% | |
| 20~29 | 5 | 5% | |
| 10~19 | 0 | 0% | |
| 0~9 | 0 | 0% | |
| No Answer | 0 | 0% | |

응답자: 법과대학 교수진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에 대한 기대치를 100으로 봤을 때, 본인은 현실적으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 90~100 | 0 | 0% | |
| 80~89 | 1 | 1% | |
| 70~79 | 11 | 12% | |
| 60~69 | 15 | 16% | |
| 50~59 | 17 | 18% | |
| 40~49 | 22 | 24% | |
| 30~39 | 11 | 12% | |
| 20~29 | 12 | 13% | |

| | | | |
|-----------|---|----|--|
| 10~19 | 0 | 0% | |
| 0~9 | 3 | 3% | |
| No Answer | 0 | 0% | |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에 대한 기대치를 100으로 봤을 때, 본인은 현실적으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 90~100 | 5 | 6% | |
| 80~89 | 7 | 8% | |
| 70~79 | 6 | 7% | |
| 60~69 | 11 | 12% | |
| 50~59 | 14 | 16% | |
| 40~49 | 9 | 10% | |
| 30~39 | 8 | 9% | |
| 20~29 | 12 | 13% | |
| 10~19 | 8 | 9% | |
| 0~9 | 8 | 9% | |
| No Answer | 1 | 1% | |

위에서 보듯이 로스쿨 교수들은 58%가 70점 이상을 주고 있는데,¹³⁾ 반면 법학부 교수들 중 70점 이상을 준 비율은 13%에 불과하여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⁴⁾ 변호사들의 경우엔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이 18%로 나타나 법학부 교수들 보다는 약간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엔 2015. 3. 현재 변호사들 중 19%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의 응답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여 진다.¹⁵⁾

그런데 법조인 양성이 잘 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3자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를 이야기할 때 그 변호사는 평균적인 변호사들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들은 있는 법이고 로스쿨이건, 사법시험이건, 심지어 독학이건 그들은 자신을 배출하는 통로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법률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평균

13) 구체적으로 보면 90-100점이 8%, 80-89점이 27%, 70-79점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14) 13% 중 70-79점이 12%, 80-89점이 1%이고, 90점 이상으로 평가한 법학부 교수는 없었다.

15) 변호사 집단의 응답자 89명의 법조경력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이 1-5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32명(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응답자 구성비에 있어서도 적어도 로스쿨 출신 소장 법조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는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 변호사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이 논의될 때는 항상 이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 | | |
|--|----|-----|--|
| <p>▣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같이 일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본 경험이 있는가요?</p> | | | |
| 있다. | 79 | 89% | |
| 없다. | 8 | 9% | |
| No Answer | 2 | 2% | |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 | | |
|---|----|-----|--|
| <p>▣ <위 설문 2에 “있다”고 답한 분만 해당>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조인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법조경력기간이 동일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가요?</p> | | | |
| 차이가 있다. | 56 | 63% | |
| 차이가 없다. | 23 | 26% | |
| No Answer | 10 | 11% | |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주관식 설문을 통해 응답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몇 개 예시하도록 한다.¹⁶⁾

“재판진행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점”¹⁷⁾

“기본적인 이론이나 판례 등을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음”¹⁸⁾

“재판 진행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 차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핸들링이 잘 안됨 대학의 법학 전공을 다시 되살리고 법학 전공 이후 로스쿨로 진학하여 교육기간을 장기로 해줄 필요 있고, 비법학자의 경우 보완, 보충 교육 실시 필요”¹⁹⁾

“다른 법보다 헌법, 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행정법만이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충실한 교육이 필요, 실무 교육은 둘째 치고 기본기 교육이 절실함”²⁰⁾

16) 주관식 응답 전문은 <<http://blog.naver.com/hslee1427/220317191669>>에서 볼 수 있음. G5와 G8이 누락된 것은 다른 주관식에는 응답하였으나 본 건 설문4.에 관하여 따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임.

17) G3.3 2015-03-23 16:45:28 [Q4]

18) G3.4 2015-03-23 16:51:38 [Q4]

19) G3.6 2015-03-23 17:06:27 [Q4]

20) G3.7 2015-03-23 17:55:53 [Q4]

“실체법 및 소송법 지식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거나 실수하였고, 필요 없는 주장으로 소송상대방 및 법원을 피곤하게 하였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던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²¹⁾

“대학에서 법률이론에 대한 법학교육을 받은 수준으로 실제 업무를 하기에는 미흡함. 법률문장 교육이 미흡함.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²²⁾

“기본적으로 서면 작성능력이 떨어지고, 변론시에도 논점과 상관없는 변론을 하였음.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²³⁾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체법적 지식의 부족과 소송 절차 진행 미흡인데, 로스쿨 3년의 기간이 갖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을 나름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변호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평가는 로스쿨 교수들이 나름대로 만족하게 자평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많이 느껴진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무교육에 관한 본인의 판단은? (복수응답 가능) | | | |
|--|----|-----|--|
| 학부에서의 법학 이론 교육과 큰 차이가 없다. | 19 | 20% | |
| 실무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이론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 | 19 | 20% | |
| 법학 이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실무가 경시 되고 있다. | 10 | 11% | |
| 실무 교육에 배정된 시간이 충분하다. | 18 | 19% | |
| 학생들이 실무교육을 등한시 하는 편이다. | 9 | 9% | |
| 이론교수와 실무교수들 간에 알력이 있는 편이다. | 16 | 17% | |
| 이론교수와 실무교수들 간에 적절한 존중과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 29 | 31% | |
| 현재의 실무교육 수준이면 변호사 배출로 충분하다. | 29 | 31% | |
| 전체 전임교원들 중에서 실무교원의 숫자가 적절한 편이다. | 33 | 35% | |
| 전체 전임교원들 중에서 실무교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 22 | 23% | |

21) G3.9 2015-03-24 10:18:58 [Q4]

22) G3.10 2015-03-24 10:22:44 [Q4]

23) G3.11 2015-03-24 14:58:02 [Q4]

위에서 보듯이 현재의 실무 교육이면 변호사 배출로 충분하다는 견해(31%)와 전체 전임 교원 중에서 실무교원의 숫자가 적절한 편이라고 보는 견해(35%)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실무교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라고 보는 견해도 23%에 이른다. 이론교수와 실무교수들 간에 적절한 존중과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31%이지만, 반면 양 측에 알력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7%로 만만치 않다. 이것은 현재 로스쿨 전임 교원들 중에서 실무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20%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 현재 로스쿨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무교육에 관한 본인의 판단은? (복수응답 가능) | | | |
|--|----|-----|--|
| 학부에서의 법학 이론 교육과 큰 차이가 없다. | 39 | 44% | |
| 실무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이론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다. | 12 | 13% | |
| 법학 이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실무가 경시 되고 있다. | 28 | 31% | |
| 실무 교육에 배정된 시간이 충분하다. | 2 | 2% | |
| 학생들이 실무교육을 등한시 하는 편이다. | 17 | 19% | |
| 현재의 실무교육 수준이면 변호사 배출로 충분하다. | 3 | 3% | |
| 전체 전임교원들 중에서 실무교원의 숫자가 적절한 편이다. | 4 | 4% | |
| 전체 전임교원들 중에서 실무교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 40 | 45% | |

변호사들에 대한 응답 수치가 보여주듯 로스쿨 교수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실무 교육의 정도와 시장에 배출된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기대하는 외부에서의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우월의식의 소산으로 치부하거나, 로스쿨에서는 “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보내면 되고 실무는 변호사가 되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말로 문제를 피해 가기엔²⁴⁾ 범조인 양성 주체로서의 로스쿨이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할

24) 실무는 로스쿨을 나가서 배우면 된다는 말은 마치 프로 골퍼가 아직 실력은 안 되지만 투어 다니면 그때부터 잘 치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돈 받으면서 실무를 익힐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가 로스쿨이라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 그 정도의 인재를 만든다면 왜 학부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로스쿨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실무를 아직도 익혀야 될 정도의 사람이면 도제 과정에 있어야지, 변호사로서 활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도제 교육, 직업 로스쿨의 정신이 그런 것이다.

필요가 있다.

한편 법조인 양성에 관하여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현재 로스쿨의 커리큘럼, 과목간 안배, 실무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매긴 5개 등급 중에서는 중(中) 이하로 평가한 비율이 56%가 되어 등급에 대한 평가와 양성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다소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법학 교육의 커리큘럼, 과목간 안배, 실무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등급을 매긴다면 아래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 | | |
|-----------|----|-----|--|
| 최상 | 5 | 5% | |
| 상 | 35 | 37% | |
| 중 | 34 | 36% | |
| 하 | 15 | 16% | |
| 최하 | 4 | 4% | |
| No Answer | 2 | 2% | |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법학 교육의 커리큘럼, 과목간 안배, 실무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등급을 매긴다면 아래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 | | |
|-----------|----|-----|--|
| 최상 | 2 | 2% | |
| 상 | 8 | 9% | |
| 중 | 31 | 35% | |
| 하 | 33 | 37% | |
| 최하 | 12 | 13% | |
| No Answer | 3 | 3% | |

이런 결과는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상(上) 이상의 등급을 준 비율은 11%에 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등급에서의 불만은 아직도 로스쿨이 커리큘럼 개설편과 운영, 변호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흥미 있는 것은 조사대상자 중 입학 정원 100명 이상의 로스쿨 재직 교수의 비율이 45%인데,²⁶⁾ 이 비율이 등급을 상(上) 이상으로 평가한 42%와 유사하다는

25) 동일한 설문에 대하여 법학부 교수들은 94%가 중 이하의 등급이라고 평가하였고, 변호사들은 85%가 중 이하로 평가하였다.

26) 총 95명의 응답자 중 규모 150명인 로스쿨의 교수는 4%(4명), 규모 120명인 로스쿨 교수는 29%(28명), 규모

것인데, 아마도 학교 규모와 등급 평가 간에 상관관계도 있지 않은가 싶다. 소속 학교의 입학 정원에 따른 비율과 응답 성향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추론케 하는 항목들은 그 밖에도 몇 군데 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로스쿨 과목 개설에서의 과목 폐강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이다. 95명의 응답자 중에서 폐강과 무관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1명(43%)인데, 이는 100명 이상 로스쿨에 재직 중인 43명과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 반대로 80명 이하의 로스쿨에 재직 중인 52명은 직접 폐강된 경험이 있는 22명과 폐강 경험은 없지만 강의 개설시 폐강 부담을 느끼는 32명을 합한 54명과 거의 일치한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개설하고 있는 과목이 폐강된 적이 있거나 폐강 부담을 느끼는가요? | | | |
|---|----|-----|--|
| 직접 폐강된 경험이 있다. | 22 | 23% | |
| 폐강 경험은 없지만 강의 개설시 폐강 부담이 있다. | 32 | 34% | |
| 폐강과 무관하다. | 41 | 43% | |
| No Answer | 0 | 0% | |

로스쿨 교수의 57%가 폐강을 경험했거나, 폐강의 부담을 늘 안고 있다면 사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특성화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다. 100점 만점으로 특성화 교육을 평가할 때 로스쿨 교수들이 70점 이상을 준 비율은 34%(32명)이었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input type="checkbox"/> 소속 학교의 특성화 교육 기대치를 100으로 놓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 |
|---|----|-----|--|
| 90~100 | 3 | 3% | |
| 80~89 | 10 | 11% | |
| 70~79 | 19 | 20% | |
| 60~69 | 17 | 18% | |
| 50~59 | 12 | 13% | |
| 40~49 | 10 | 11% | |

100명인 로스쿨의 교수는 12%(11명)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들 학교를 '대형 로스쿨'이라 하고, 나머지를 '중소형 로스쿨', 특히 그 중에서 4~50명을 "소형 로스쿨"로 분류하고자 한다.

| | | | |
|-----------|----|-----|--|
| 30~39 | 13 | 14% | |
| 20~29 | 4 | 4% | |
| 10~19 | 4 | 4% | |
| 0~9 | 2 | 2% | |
| No Answer | 1 | 1% | |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에 대한 설문에서 58%(56명)가 70점 이상을 준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성화 교육은 로스쿨을 주도한 세력들이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기치로 야심만만하게 내걸었던 구호였다. 60점 이상을 준 비율이 52%로 나타나고 있어 실패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형 로스쿨 재직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로스쿨 교수들이 폐강과 폐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추론이 맞다면 중소 로스쿨에서의 특성화 교육은 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특성화란 선택과목 위주로 되어 있어 소수의 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 쏠리는 현실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히 정원 40~80명의 중소형 로스쿨의 경우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성화 교육의 실패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크게 무색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조속히 보완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출구의 공정성 문제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합격한 본인에게조차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을 숨김으로써 공직 임용이나 취업 등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같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소위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과 지방 출신 사이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연줄에 의한 채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쪽의 비율이 많지만, 로스쿨 교수들의 경우엔 답변을 유보한 2명을 제외하고 93명 중 46명이 지금처럼 비공개를, 47명이 공개를 지지하여 사실상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반면 법대 교수들은 88%가, 변호사들은 80%가 압도적으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들 중에는 답변 유보가 4%이고, 지금처럼 비공개 유지의 비율이 16%인데, 응답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비율을 20%로 보았을 때,²⁷⁾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7) 법조인력 양성의 방안으로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로의 일원화 비율 주장 25%, 변호사자격시험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 17%(응답유보 2%) 등 비교적 그 출신에 따라 선호도가 분명히 갈리는 경향이 있는 설문조사 결과의 비율을 종합하면 본 응답에서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7-20%는 되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시험 성적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에 관하여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 | | | |
|----------------|----|-----|--|
| 지금처럼 비공개해야 한다. | 46 | 48% | |
| 공개하여야 한다. | 47 | 49% | |
| No Answer | 2 | 2% | |

응답자 : 법과대학 교수진

▣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시험 성적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에 관하여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 | | | |
|----------------|----|-----|--|
| 지금처럼 비공개해야 한다. | 11 | 12% | |
| 공개하여야 한다. | 81 | 88% | |
| No Answer | 0 | 0% | |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시험 성적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에 관하여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 | | | |
|----------------|----|-----|--|
| 지금처럼 비공개해야 한다. | 14 | 16% | |
| 공개하여야 한다. | 71 | 80% | |
| No Answer | 4 | 4% | |

한편 로스쿨 교수들의 경우 성적 공개, 아니면 비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갈리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법학교육 위기 탈출의 대안으로는 변호사자격시험화(?)²⁸⁾를 1순위(57명)로 꼽고 있다.

28) 원래 자격시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자격이 되면 붙여주고, 자격이 안되면 떨어뜨리는 절대적 기준 통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 쪽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자격시험을 합격률 사전 보장제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할 말이다. 예컨대, 응시자의 80%는 무조건 붙여 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자격시험이 아니라 사전합격률보장시험이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아래 대안들 중 법학 교육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 표시를 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 | | |
|--|----|-----|--|
| 학부제 부활 | 35 | 37% | |
| 사법시험 존치 | 13 | 14% | |
| 예비시험 도입 | 8 | 8% | |
|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법학전공자 최소선발기준 설정 | 16 | 17% | |
|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 57 | 60% | |
|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일원화 (총정원 2천명, 응시횟수 제한) | 11 | 12% | |

하지만 법대 교수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66%가 반대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경우엔 81%가 반대하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을 제외한 두 그룹은 모두 사전 합격률 보장시험이 시험의 공정성에도 반하고,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응답자 : 법과대학 교수진

▣ 현재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변호사자격 시험의 자격화를 통해 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합격시켜 주어(예컨대, 응시대비 85% 이상)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 | | | |
|-----------|----|-----|--|
| 찬성한다. | 29 | 32% | |
| 반대한다. | 61 | 66% | |
| No Answer | 2 | 2% | |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현재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변호사자격 시험의 자격화를 통해 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합격시켜 주어(예컨대, 응시대비 85% 이상)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 | | | |
|-----------|----|-----|--|
| 찬성한다. | 15 | 17% | |
| 반대한다. | 72 | 81% | |
| No Answer | 2 | 2% | |

한편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원과 검찰의 공직 임용 과정에 있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선발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선발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비교하는 설문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변호사 그룹

▣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로클럭 임용과 검사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수로 준다면?

| | | | |
|-----------|----|-----|--|
| 90~100 | 6 | 7% | |
| 80~89 | 5 | 6% | |
| 70~79 | 6 | 7% | |
| 60~69 | 14 | 16% | |
| 50~59 | 13 | 15% | |
| 40~49 | 6 | 7% | |
| 30~39 | 6 | 7% | |
| 20~29 | 6 | 7% | |
| 10~19 | 9 | 10% | |
| 0~9 | 16 | 18% | |
| No Answer | 2 | 2% | |

응답자: 변호사 그룹

▣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로클럭 임용과 검사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수로 준다면?

| | | | |
|-----------|----|-----|--|
| 90~100 | 21 | 24% | |
| 80~89 | 27 | 30% | |
| 70~79 | 13 | 15% | |
| 60~69 | 6 | 7% | |
| 50~59 | 9 | 10% | |
| 40~49 | 4 | 4% | |
| 30~39 | 0 | 0% | |
| 20~29 | 1 | 1% | |
| 10~19 | 1 | 1% | |
| 0~9 | 4 | 4% | |
| No Answer | 3 | 3% | |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직 임용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이 20%인 반면, 같은 점수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법연수원 출신의 공직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로스쿨 경우 3.5배에 가까운 69%에 달하였다. 사법시험의 폐지와 함께 사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원 재판연구원 임용과 검찰의 검사 임용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 법과대학 교수진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원의 로클럭 임용과 검사 임용시 별도의 공개적인 선발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 | | | |
|-----------|----|-----|---|
| 필요하다. | 80 | 87% |  |
| 필요없다. | 11 | 12% |  |
| No Answer | 1 | 1% |  |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원의 로클럭 임용과 검사 임용시 별도의 공개적인 선발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 | | | |
|-----------|----|-----|---|
| 필요하다. | 70 | 79% |  |
| 필요없다. | 17 | 19% |  |
| No Answer | 2 | 2% |  |

4. 로스쿨의 재정문제

로스쿨이 양질의 법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소속 학교의 재정 상태에 관한 설문에서 관심을 안 가져 모르겠다고 응답한 11명(12%)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로스쿨 재정 상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교내 지원 없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도 37명(39%)이나 되었다. 관심을 안 가져 모르겠다고 응답한 11명을 재정적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현재 수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다는 8명과 합해도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분류되는 사람은 모두 19명(20%)이다. 응답자 중 120명 이상인 로스쿨에 속한 사람이 32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20명의 정원을 할당받고 있는 학교들 역시 교내외의 지원 없이는 독자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은 교내 지원만으로 안 되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만 생존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명(46%)에 달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 현재 소속 법전원의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요? (복수 응답 가능) | | | |
|--|----|-----|--|
| 관심을 안 가져 모르겠다. | 11 | 12% | |
| 교내 지원을 포함한 일체 외부 지원없이 독자생존 가능하다. | 0 | 0% | |
| 현재 수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다 | 8 | 8% | |
|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 지속할 수 없다. | 37 | 39% | |
| 법전원 재정지원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 (타 단과대학)의 불만을 알고 있다. | 52 | 55% | |
| 학교 본부(재단)로부터의 재정 지원 축소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 33 | 35% | |
| 교내 지원만으로 안 되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생존할 것이다. | 44 | 46% | |
| 로스쿨 재정지원에 대한 교내 여론은 아직은 호의적인 편이다. | 6 | 6% | |

한편 교내에서 로스쿨 지원에 대하여 호의적인 편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6명(6%)에 불과하고, 반면 학교 본부나 재단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축소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명(35%), 그리고 교내 구성원들이 로스쿨 지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52명(5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로스쿨의 재정난이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님을 보여준다.

5. 법학 교수들의 위기진단과 해법

현 상황이 법학으로 보서는 위기라고 인식하는 데는 로스쿨 교수들과 법과대학 교수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²⁹⁾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 측의 평가가 확연히 갈림을 알 수 있다. 로스쿨 교수들 중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는 사람은 41명(43%)인 반면, 법과대학 교수들 중에서는 75명(82%)가 매우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기가 아니라는 비율도 로스쿨 쪽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과대학 교수들의 경우 위기가 아니라고 본 비율은 2%에 불과하였다.

29) 그래프에서 보듯이 위기 이상으로 보는 비율이 로스쿨 교수들의 경우 74%, 법과대학 교수들의 경우엔 96%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 지금의 법학교육을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보는 진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 | | |
|--|----|-----|--|
|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 41 | 43% | |
| 위기는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 29 | 31% | |
| 모르겠다. | 4 | 4% | |
| 위기가 아니다. | 20 | 21% | |
| No Answer | 1 | 1% | |

응답자 : 법과대학 교수진

| ■ 지금의 법학교육을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보는 진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 | | |
|--|----|-----|--|
|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 75 | 82% | |
| 위기는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 13 | 14% | |
| 모르겠다. | 1 | 1% | |
| 위기가 아니다. | 2 | 2% | |
| No Answer | 1 | 1% | |

이런 현실 인식의 차이는 그 위기탈출을 위한 대안 선호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이 으뜸으로 꼽은 대안은 사전합격률 보장형 자격시험이었으나(60%, 7명), 법과대학 교수들 중에서 이것을 꼽은 비율은 9%(8명)에 불과했다. 반면 법과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한 사법시험준치(66%, 61명)는 로스쿨 교수들로부터는 14%(13명)의 지지 밖에 받지 못했다.

사법시험의 존치가 법학 교육 위기의 타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의 평가에서도 양측의 시각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법과대학 교수들은 92%(74명)가 법학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반대로 로스쿨 교수들의 62%(59명)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더라도 법학 교육의 활성화에는 영향이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 준치 다음으로 들고 있는 대안은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법학 전공자 최소선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었으나(43%, 40명), 로스쿨 교수들은 법학사 쿼터제에 대하여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17%, 16명). 양측이 그나마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는 학부제 부활인데 로스쿨 교수들의 37%(35명), 법대 교수들의 32%(29명)이 이를 대안으로 들고 있다. 학부제 부활은 비 로스쿨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기존 로스쿨들에 학부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만 1/3 가량이 학부제 부활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고사 위기를 심각하게 느낀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아래 대안들 중 법학 교육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 표시를 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 | | |
|--|----|-----|--|
| 학부제 부활 | 35 | 37% | |
| 사법시험 존치 | 13 | 14% | |
| 예비시험 도입 | 8 | 8% | |
|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법학전공자 최소선발기준 설정 | 16 | 17% | |
|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 57 | 60% | |
|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일원화 (총정원 2천명, 응시횟수 제한) | 11 | 12% | |

응답자 : 법과대학 교수진

▣ <위기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아래 대안들 중 법학 교육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 표시를 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 | | |
|--|----|-----|--|
| 학부제 부활 | 29 | 32% | |
| 사법시험 존치 | 61 | 66% | |
| 예비시험 도입 | 22 | 24% | |
|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법학전공자 최소선발기준 설정 | 40 | 43% | |
|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 8 | 9% | |
|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일원화 (총정원 2천명, 응시횟수 제한) | 23 | 25% | |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선발인원 500명 가량의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것이 법학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가요?

| | | | |
|---------------|----|-----|--|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9 | 9% | |
| 도움이 될 것이다. | 14 | 15% | |
| 모르겠다. | 12 | 13% | |

| | | | |
|----------------|----|-----|--|
| 영향이 없을 것이다. | 24 | 25% | |
|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 35 | 37% | |
| No Answer | 1 | 1% | |

응답자 : 법과대학 교수진

■ 선발인원 500명 가량의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것이 법학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가요?

| | | | |
|----------------|----|-----|--|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65 | 71% | |
| 도움이 될 것이다. | 19 | 21% | |
| 모르겠다. | 4 | 4% | |
| 영향이 없을 것이다. | 2 | 2% | |
|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 2 | 2% | |
| No Answer | 0 | 0% | |

로스쿨 교수들을 상대로 한 사법시험을 통해 5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법학사로 한정할 경우 소속 학교가 학부제로 돌아가는 데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설문문에 대하여 12%(11명)는 의견을 유보하였고, 66%(62명)가 반대 내지 적극 반대, 그리고 24%(22명)이 찬성 내지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응답자 : 로스쿨 교수진

■ 만일 사법시험을 통해 5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사법시험 응시는 법학사로 한정할 경우 본인 소속 법전원의 학부제 복귀에 본인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은가요?

| | | | |
|-----------|----|-----|--|
| 적극 찬성한다. | 11 | 12% | |
| 찬성한다. | 11 | 12% | |
| 모르겠다. | 11 | 12% | |
| 반대한다. | 33 | 35% | |
| 적극 반대한다. | 29 | 31% | |
| No Answer | 0 | 0% | |

그런데 여기서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학부제 복귀를 선호하는 24%의 비율은 다른 여러 설문 항목들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근사치를 보이고 있다. 즉 정원 40~50명의 소형 로스쿨 소속 비율 24%(22명), 폐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3%(23명)과 이들이 오버랩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 비율은 사법시험이 법학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율 24%(23명)과도 동일하다. 이상을 살펴보면 같은 로스쿨 내에서도 사법 시험 준비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학부로 복귀하고자 하는 로스쿨들, 특히 중소형 로스쿨들의 참여를 예상할 수 있다. 의견을 유보한 12%(11명) 역시 사법시험 준비가 조기에 확정되면 위에서 본 로스쿨의 재정난으로 인한 내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 동참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소결

필자가 위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이자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과정에 있어서 로스쿨의 고비용의 문제는 장학금 지급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을 법조계 진입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 격차로 인한 자발적 포기를 하도록 유인한다. 입학전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로스쿨 교수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 개발에는 소극적이며, 법학 소양 측정에도 절반 가량의 로스쿨 교수들이 반대함으로써 이들은 법학을 전혀 접하지 않은 순수한 원자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에 대한 최소 쿼터의 배정에도 소극적이며, 이들의 상당수는 변호사 시험이 사전합격을 보장제로 굴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³⁰⁾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관하여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천하의 인재들을 뽑아서 정말 바람직한 공기(公器)를 만들겠다는 야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강의시간에 귀찮게 물어보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 먹기에 급급한 법학 초년생들을 모아 적당하게 시간을 보낸 뒤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시험을 통해 대량 합격 인증을 받았다는 생각인지 구분되지 않는다.³¹⁾

둘째, 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매우 충실하게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편이나, 변호사들이 보여주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와 반대이다. 그러나 로스쿨 내부적으로는 실무 교육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 의견이 교수들의 절대

30) 예컨대, 다음과 같은 로스쿨 교수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선택과목의 변사에서 제외 [Q20] 사시가 폐지되고 변시 합격률이 입학정원이 아닌 응시정원의 75% 수준으로 고정되면 법전원 교육은 정상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1.14 2015-03-18 08:19:55 [Q19]

31) 필자는 주관식 응답을 해 온 어느 로스쿨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각 교수가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실력, 열정, 인성,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갖추고 있다면 여건이 다소 미비해도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공동체의 힘으로 차츰 개선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어떤 제도 하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시 출신 실무자들이 사법연수원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로 결국 과거 사법연수원의 엘리트 교수들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시 출신 실무자들이 학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과 대조됩니다. 결국 여러모로 훌륭한 분들을 계속 교수요원으로 충원하는 순수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법학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G1.4 2015-03-17 20:43:55 [Q19].

수를 차지하는 기존의 이론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는 실무 교수들의 비율에 상응한 정도의 비율에서 실무 전임교원의 부족과 실무 교육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로스쿨에는 바깥의 시장에서는 공기(公器)가 공기(空器)에 가깝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실제로 공기(公器)를 만드는데 경험이 가장 많은 소수의 실무교수들의 우려를 묵살하면서 “우린 잘 만들고 있는데 웬 따지냐?”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를 고집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시험이라는 견제장치가 없어지는 날 이론 교수들이 주축이 된 ‘내 식으로(my way)’는 더 심해질 수 있다. 한편, 로스쿨 별로, 특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특성과 교육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대체로 주를 이루고 폐강 경험 등이 말해 주는 것처럼 선택과목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당초 생산독점권을 가져가면서 우리만이 제대로 공기(公器)를 빚을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이 빈말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걸 말해 준다.³²⁾

셋째, 출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서 법과대학 교수들과 변호사 그룹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물론 판사와 검사 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새로운 임용 시험과 같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통로를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만을 통한 판, 검사 임용 자격 부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넷째, 재정적인 점에서 로스쿨들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 자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 내부적 관점에서 본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정 건전성은 공기(公器) 생산의 기본 토대인데,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한 현실 문제이다. 4-5명의 소형 로스쿨의 재정난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조사결과 100명 이상의 로스쿨에서도 재정 위기가 감지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구조

32) 이 문제에 관하여 어느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고언하고 있다. “기존의 학계 교수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변호사라는 실무가를 바로 배출하겠다고 해서 법전원을 출범시킨 이상 법전원 교육은 실무 대비 교육 나아가 변호사시험 대비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법전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들은 정작 법 실무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습니다.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書生)이 그물 던지는 법에 관한 책을 보고 그물 던지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책의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식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에 깊이 빠져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그물 던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은 기술이나 잔꾀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법 실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은 인문학과 달리 법 실무라는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학문 영역입니다. 더욱이 법전원이 변호사라는 어부를 양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 법전원 교육은 당연히 법 실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 교원 자격 요건에 일정한 기간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신규 교원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되, 기존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법연수원과 변호사협회, 법원과 검찰 등 법 실무 관련 기관에서 적어도 2년간 연수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연수 과정을 거친 자만 법전원 교원으로 잔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전원은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도 아래에서, 우수한 인재를 입학시켰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교육 담당자이자 제도 운영 담당자가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제도의 운명은 명약관화합니다”. G1.38 2015-03-19 16:33:34 [Q19]

조정이 되지 않는 한 로스쿨의 재정위기는 당장 로스쿨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원 대상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렇잖아도 고비용 구조인 로스쿨을 통한 법조진입 접근권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로스쿨 정원 확대를 통한 중소형 로스쿨의 활로 타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인지는 새삼 논박할 필요를 못 느낀다. 퇴로를 열어주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어 적어도 정원 100명 이상의 로스쿨들만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모두가 사는 길이다.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이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툭툭 털고 갈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2007년을 전후하여 짝퇘 모방기에 했던 기망극의 재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³³⁾ 미국의 로스쿨 도입 역사와 수 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다. 진입규제와 세습의 시도, 졸업장 마케팅, 학력 인플레이, 사회적 기회 균등 보장 논란이 그것들이다. 다만, 누가 어떤 가치를 갖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했는지는 그 역할은 완전히 달랐다. 미국의 법학자들은 뉴욕 주 변호사회의 세습제 시도 등과 같은 진입장벽에 맞서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 균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비록 시대의 흐름에 쫓겨 결국 직업 로스쿨로 가긴 했지만 대학원에 로스쿨을 얹어 놓고 학위 장사를 한다는 건 로스쿨의 아버지들의 생각이 아니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곳은 학문적 자존심을 쫓아 일찍 대학원 체제로 갔지만, 로스쿨을 두기로 한 대학들에게는 직업 교육과 함께 기회균등의 보장이 큰 관심사였다.³⁴⁾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험은 정 반대이다. 주로 젊은 소장파 변호사들이 기회균등을 주장하고, 법학을 학문으로 했다는 로스쿨의 교수들이 기꺼이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을 도외시키고 강부회의 논리로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정당화하면서, 제대로 직업군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인 시각에는 눈을 닫은 채 편한 길 (사전합격 보장제, 법학능력시험 측정 불허,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등)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된다.

정말 과거 미국식 로스쿨 도입기에 그것이 제대로 된지도 모르고 받아들였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학자적 양심이자 지식인의 도리일 것이다. 무지에 대한 비난은 그나마 사법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동력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비켜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로스쿨의 본질이 무엇인지, 로스쿨을 도입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의 주들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제도를 없앴으로써 '내가 더 잘될 수 있다'는 해괴한 탐욕 논리로 국민과 자신을 더 이상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합격을 보장이나 돈 달라는 이야기 말고 다른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33) 어느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질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저질의 법률가들만 배출될 것. 학부 부활 및 사시존치. G1.8 2015-03-17 21:57:48 [Q19]"

34) 이 부분은 위 학술대회 발제문의 전반부 내용인데, 추후 학술지를 통해 따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응답자 : 법과대학 교수진

| ■ 다음 중 법조인력 양성 방안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
|---|----|-----|--|
| 현행 규모 로스쿨 유지와 사법시험 폐지 | 3 | 3% | |
|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 | 20 | 22% | |
| 로스쿨 정원 일부의 사법시험 할당으로 양 제도 병행 | 55 | 60% | |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 11 | 12% | |
| No Answer | 3 | 3% | |

응답자 : 변호사 그룹

| ■ 다음 중 법조인력 양성 방안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
|---|----|-----|--|
| 현행 규모 로스쿨 유지와 사법시험 폐지 | 22 | 25% | |
|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 | 37 | 42% | |
| 로스쿨 정원 일부의 사법시험 할당으로 양 제도 병행 | 19 | 21% | |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 8 | 9% | |
| No Answer | 3 | 3% | |

위 그래프는 법조인력 양성의 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법대 교수진들과 변호사들을 상대로 물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병행을 합하면 사법시험 존치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교수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전문가들과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음을³⁵⁾ 당국지들과 입법자들은 유념하여야 한다.

필자는 일찍부터 사법시험 존치가 말로 로스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살리는 길

35) KBS가 2015. 2. 5.부터 2. 9.까지 온라인 상에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9,911명 중 57.5%가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학부 교원들의 경우 법조인력 양성 방안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로스쿨 정원 일부의 사법시험 할당으로 양 제도 병행이 60%,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가 22%, 도합 82%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였고, 변호사들은 양 제도 병행 21%,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 42%로 63%가 사법시험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로스쿨 교원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500명 정도의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찬성과 찬성이 24%, 반대와 적극 반대가 64%로 대조를 이뤘다. KBS의 일반인 상대 여론조사를 또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다면 로스쿨 교원들만이 4개 집단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며, 건강하게 양 제도가 병행할 때 법학으로서의 학문도 살며, 사회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³⁶⁾

지금이라도 소아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법조인을 만들어내고, 사회통합을 이루며, 법학이라는 학문도 살려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6) 이호선(2011),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 국민대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45-48면.